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7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65833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9. 8. 29.

판 결 선 고 2019. 10.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8.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7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임의경매절차([redacted]지방법원 B)에서 [redacted]시 C 제5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01,200,000원에 매수하여 2015. 5.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4,048,000원, 지방교육세 404,800원, 농어촌특별세 202,400원 합계 4,655,2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취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라 4%를 적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14. 피고에게 앞서 납부한 취득세 등에 관하여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그 취지는 위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2.8%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 피고는 2018. 10. 8. 원고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함을 통지하였고, 그 사유는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승계취득이라는 것이다(이 경정청구의 거부를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2. 12.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제7호 나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7

가. 원고의 주장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에 관한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원고의 취득세 등은 위 세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아래 표와 같이 감액되어야 하고, 이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구분	과세표준	당초세액	정정세액	환급세액
합계	101,200,000	4,655,200	3,197,920	1,457,280
취득세		4,048,000	2,833,600	1,214,400
지방교육세		404,800	161,920	242,880
농특세		202,400	202,400	0

나. 판단

경매는 매매의 일종으로서 그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고,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매수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며(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640 판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3703 판결,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736 판결,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941 판결 등),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세 세율과 관련하여 이를 달리 해석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것이 원시취득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7

재판장 판사 이상훈

판사 설정은

판사 강성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7

별지

원고가 납부한 지방세의 표시

과세대상 부동산 표시	납부일자	과세표준	세목	금액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redacted], [redacted] 5층 [redacted]호	2015. 5. 13.	101,200,000원	취득세	4,048,000원
			지방교육세	404,800원
			농어촌특별세	202,400원
			합계	4,655,200원